

# 의안검토보고

의안 번호	제 9 호		
건 명	2002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(제3차)		
제안(출)자	서초구청장	제안(출)년월일	2002. 7. 31.
검토위원명	전문위원 김 재 근		

## 1. 검토내용

### 가. 제안이유

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사업부지내 토지를 사업부지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

### 나. 주요내용 : 토지매각

잠원동 58-11 (대) 408.2m<sup>2</sup>

잠원동 58-13 (대) 101.1m<sup>2</sup>

## 2. 검토결과

### 가. 본 계획안은

잠원동 58번지 일대에 잠원그린연합주택조합외 1개 조합에서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2000. 8. 7. 승인됨에 따라 건축허가된 사업부지내 서울시 소유 도로부지를 서울시에서 용도폐지 후 서초구에서 소유권을 무상귀속 이전하여 건축주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임.

## 나. 주요골자

- 잠원동 58-11 (대지) 408.2m<sup>2</sup>와 잠원동 58-13 (대지) 101.1m<sup>2</sup>등 총 2필지 509.3m<sup>2</sup>를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내용임.
- 매각추정가액은 공시지가기준 (2001. 9. 1현재) m<sup>2</sup>당 1,570천원으로 총799,601천원임.

## 다. 검토의견

- 잠원동 58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된 토지중에는 잠원동 사무소와 동 매각대상 토지가 포함되어 있어 1994년 12월부터 동청사부지 이전 등을 위한 서초구청과 조합측의 수차례 협의가 진행되었으며, 그 결과 사업부지내 용도폐지된 도로의 매수신청이 있었음.
- 주요 추진경위를 보면
  - 1994. 12. : 서초구청에 잠원동사무소 이전 청원 제출
  - 1997. 10. 24 : 잠원동사무소 이전 및 신축의견을 조합측에서 제출
    - 동사무소 부지 200평 및 동사무소 신축 기부채납
    - 잠원동 61-6 임시청사 건축 기부채납
  - 2000. 8. 7 :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
    - 건설규모 : 지하 2층, 지상 9-17층 아파트 2개동 117세대
    - 대지면적 : 5,612.5m<sup>2</sup>
    - 건축면적 : 1,311.21m<sup>2</sup>
    - 사업기간 : 2000. 9 ~ 2002. 9 (예정)
  - 2000. 10. 17 : 서초구청과 조합측간에 동사무소 이전과 관련 억정서를 체결
    - 조합은 잠원동 58-27, 31호, 662m<sup>2</sup>를 사업승인과 동시 기부채납
    - 조합은 동 청사를 건축하여 300평은 기부채납, 200평은 구청에서 건축비 부담
    - 도로 2필지는 수의계약으로 조합에 매각
  - 2000. 9. 25 : 도로부지 소유권 조속 이전 요구
  - 2001. 4. 3 : 서울시에서 도로용도폐지 결정 (잠원동 58-11, 13)
  - 2002. 1. 9 : 잠원동 58-11, 13(구 도로부지) 소유권을 서울시에서 서초구로 이전

- 2002. 4. 30 : 서초구청과 조합간 추가 약정
- 2002. 5. 9 : 건축주의 구유재산매수신청서(잠원동 58-11, 13)가 접수되었음.
- 2002. 5. 31 : 구유재산관리계획서를 의회에 제출

#### ○ 위 내용을 검토한 바

- 본 계획안은 2002. 5. 31 구의회에 제출하였다가 제3대 의회 임기종료로 지방자치법 제59조 단서규정에 의해 폐기되어 제4대 임기개시후 다시 제출한 것으로
- 위 매각대상토지는 조합주택사업승인내 토지로서 매각을 하여야 주택 건설사업승인 조건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,
- 당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(2000. 10. 27) 변경조건에도 위 도로부지는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행정기관의 용도폐지 결정통보를 받은 후 1월 이내 매입토록 되어 있고, 건축주가 동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
- 공유재산 취득·처분에 관한 관련법령(지방재정법 제77조, 지방재정법 제84조 제1항, 제2항,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)상 1억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시 관리계획을 수립,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### 3. 참고사항

#### □ 관련법령

-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1, 2항
-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, 제1항

## [ 관련법령 ]

### 〈 제7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〉

제77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# 〈 제84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〉

제84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.  
 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(매입, 기부채납, 무상양수, 환지, 무상귀속, 교환, 건물의 신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·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 <개정 1995. 5. 16, 1996. 4. 27, 1998. 7. 16, 2000. 10. 20>

-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 원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).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(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)로 하고,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

### 〈 제35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〉

제35조 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 <개정 1994. 3. 16, 1999. 8. 31>  
 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

제15조의3 (중요재산·공공시설의 취득·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) ①법 제35조제1항 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- 1 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 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).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(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)로 하고,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